

「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8월 27일

나. 발 의 자: 양진오, 김낙관, 김민성, 김원섭, 김재우, 김정도,
신용하, 정지원, 추은희 의원(9인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9월 5일

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양 진 오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저출생·고령화·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정비계획 수립·시행(안 제3조~제6조)
- 지원대상(안 제7조)
- 빈집의 활용(안 제8조)
- 홍보 및 지도·감독(안 제9조~제1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 - 「농어촌정비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조례안은

- 관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실시되었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, 장기 방치되어 범죄·붕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관내 빈집 정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,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빈집 정비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별표 - 참고자료

○ 2024년 구미시 빈집정비 사업 추진 현황

구분	동지역 빈집정비사업	농촌 빈집(철거)정비사업
법적근거	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	「농어촌정비법」
대상지역	관내 동 지역	관내 읍·면 지역
사업내용	빈집 등급별 활용 및 철거 정비사업	농촌 빈집 철거비용 지원 (개소당 보조금 80만원)
2024년 사업추진현황 (1월~3월)	12개소 선정 (3등급 (10호) 및 4등급 (2호))	15동(1월~2월 공모)
2024년 사업추진현황 (4월~6월)	12개소 시범 시행 (3등급 (10호) 및 4등급 (2호))	15동(3월~12월 시행)
사업비	150백만원 철거비용 : 40백만원(2개소×20백만원) 활용비용 : 60백만원(2개소×30백만원) 안전조치 : 50백만원(10개소×5백만원)	12백만원 1,600천원/동당 (시비50%, 자부담50%)
빈집정비계획 수립	2023년 1월 완료	2025년 1월 예정

* 출처: 구미시청 주택과